



특허청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4. 25.(월) 09:00	배포 일시	2022. 4. 25.(월) 08:30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책임자	과 장 최철승 (042-481-5331)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정민 (042-481-5338)

중국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간편해진다!

- 중국,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5.5) -
- 특허청, 중국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등 설명회 개최(4.28)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중국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5.5.)함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오는 4월 28일(목) 오후 2시30분부터 중국의 헤이그 협정 선언사항 안내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의 전리법 개정 동향 및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 설명회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kipoworld)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기업 임직원, 출원인, 대리인 등 중국에 대한 국제 디자인출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 15:00 (30')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내용 안내	문성재 심사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15:00 - 15:30 (30')	중국 전리법 개정 동향 및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김세윤 변리사 (특허법인 주연)
15:30 - 16:00 (30')	질의·응답	

-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 우리나라는 '14년 3월에 가입,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중이며, 현재 미국 및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조약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이후에는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을 일괄 처리할 수도 있어 특히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한편,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선언(declaration)을 통해 자국 실정에 맞게 출원이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일정 예외를 둘 수 있어,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대상 국가의 선언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중국 출원 시에는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1개 출원에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만 포함해야 한다. 3차원 물품이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이외에도 수수료나 소유권 변경, 디자인 등록 소요기간 또한 출원 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 시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언사항을 잘 살펴보고 출원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 분	내 용	관련 규정
디자인의 설명	▶ 디자인의 독특한 특징(characteristic features)에 대한 설명 기재 필요	99년 협정 제5조(2)(a)
수수료	▶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 갱신에 대해 표준 수수료 대신 개별 지정수수료(금액은 추후 공지) 부과	99년 협정 제7조(2)
디자인의 단일성	▶ 1개 출원에는 단일 디자인*만 청구 가능 * ❶ 동일 물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유사 디자인, ❷ 단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2개 이상의 디자인 포함 ❶ 주요 디자인(main design)으로 지정된 1개 디자인과 여타 디자인이 유사해야 하며 디자인 수는 10개 초과 불가 ❷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동일한 국제분류에 속하고, 통상적으로 동시에 판매·사용되며, 각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은 동일 개념(same concept)을 가질 것	99년 협정 제13조(1)
소유권 변경	▶ 국제등록부에 소유권 변경이 기록되더라도 중국 특허청에 적법한 증명 서면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효력 없음	99년 협정 제16조(2)
존속기간	▶ 중국 국내법에 의해 최장 15년의 보호기간 부여	99년 협정 제17조(3)(c)
특정도면 요건	▶ 3차원 디자인에 대한 물품, 또는 디자인의 중요한 특징(essential feature)이 GUI와만 관련 있는 경우 물품의 요건에 부합하는 도면(세부요건 추후 공지) 제출 필요	공통규칙 제9조(3)(a)
거절통지기간	▶ 협정 거절통지기간(6개월)을 12개월로 대체	공통규칙 제18조(1)(b)
보호부여(등록) 효력일	▶ 거절통지기간(12개월) 종료일 이후라도 中 국내절차에 따른 보호 부여 일자에 효력 발생하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초과는 불가	공통규칙 제18조(1)(c)(i)
	▶ 보호부여 관련 결정이 예외적 상황으로 12개월의 거절기간 내 통지되지 못한 경우 국내절차에 따른 보호부여 일자에 효력 발생	공통규칙 제18조(1)(c)(ii)